◉보건복지부령 제1136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별표 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간호사의 기준에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외에 「지역보건법」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